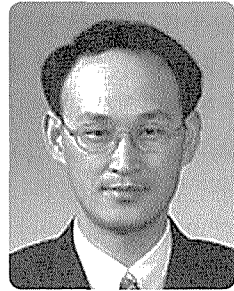


# 원유 ·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 필요성



강 병 렬

SK주식회사 정책협력팀 부장

원유 ·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는 1997년 수출입자유화이후 정유사들이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정부, 언론, 학계 등에서도 모두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차등화 수준 확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원유 · 제품간 관세차등화는 수입사의 폭발적인 증가를 두려워한 정유사들이 이를 막아보기 위해서 내놓은 고육지책이며, 궁극적으로 수입사의 영업활동을 위축시켜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유 ·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는 원칙적으로 주요 선진국 또는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입자유화의 보완조치로서 1997년에 시행되어야 했으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원료에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완성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관세 원칙이다.

원유대비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미국 및 일본이 2배에서 20배, 유럽이 3.5배~4.7배, 대만, 중국 등 우리나라 인접한 국가들도 2~8배 수준 차이가 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1.4배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참조)

즉, 원유 ·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는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든지 수입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석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선행한 정유사와 해외의 Spot성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사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들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사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정유사들의

피해가 가시화된 이후에 차등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가 심화된 이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대안을 강구하는 것은 사전에 시행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자명한 이치이다.

일부 지역에 편중된 석유자원의 특성상 산유국 정치상황에 따라 원유보다는 제품의 가격 급등 폭이 훨씬 더 크다. 일례로 1990년 걸프사태시 원유가격은 37\$/B로 상승하였지만 석유제품(등유)의 경우 70\$/B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연되는 경우에 수입사의 안정적인 제품공급을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석유시장에서의 수입비율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물량 감소는 궁극적으로 국제시장 제품가격 급등을 유발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것이다.

따라서, 석유와 같이 외국의 상황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에 대하여 문제 발생시 사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현실적으로도 최근 수입사들의 판매점유율은 6.5%(’02.1월 기준) 수준으로 인천정유 점유율(6.9%)에 근접하는 수준이며, 동절기 일부지역, 특정 유종의 경우 점유율이 10%를 넘고 있다.

특히, 2001년에는 정유업체 전체적으로 5,3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대부분의 수입사들은 이익을 시현한 상황에서 더 이상 시장추이를 지켜 보겠다는 것은 불합리한 관세제도로 인한 정유사들의 몰락을 방관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석유수급 안정이 석유정책상 주요한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원유·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 시행을 위해서는 제품관세 인상이 필요하나, 국제협상 진행과정에서 관세율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Standstill 원칙에 위배되어 이의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 2001년 정유사 및 수입사 세전이익

(단위 : 억원)

정유사계 (정유부분)	타이거오일	삼연석유	이지석유
△5,350	23	16	6

이에, 정부는 2000년초에 제품관세를 8%로 인상하였지만, Standstill 원칙을 감안하여 잠정관세 5%를 적용한 바 있으며, 2000년도 수입부과금 차등화 검토시에도 Standstill 원칙을 내세워 불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2001년에 석유제품에 7%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으며, 석유제품 수입부과금도 14W/l로 인상되었으나, 우리나라 교역상대국에서 Standstill 원칙을 내세워 이를 문제를 삼은 바 없으며, 현실적으로 상대국에서도 원유·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가 시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를 문제 삼을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기초 소재인 원유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 수준 자체가 외국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경우 원유관세 인하가 제품관세 인상에 앞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유관세의 경우 유럽은 무세, 미국이 0.2%~0.4%, 일본이 1% 내외이며, 우리나라와 산업환경이 유사한 대만의 경우에도 2.5%수준이며, 심지어 중국에서도 원유관세가 1.5%에 불과한 실정인 데 반해, 우리나라만 원재료인 원유에 고율의 관세(5%)를 부과하고 있다.(표 참조)

또한, 국내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원재료와 완제품에 대한 관세차이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유독 원유·석유제품간 관세차이는 미미한 실정이다.

주요 원재료/조제품의 관세율 비교('01. 5월 현재)

원 재료		조 제품		상대비교 (B/A, %)
품 명	관세율(A)	품 명	관세율(B)	
철광	1%	철강제품	8% 또는 (4~6)%	400~800
목재	1~2%	종이류	8(5)%	250~800
		목제품	8%	400~800
설탕 등 당류	3%	설탕가공 사탕 및 과자류	8%	267
커피, 코코아 등 (볶지 아니한 것)	1.5 ~ 2%	커피 및 코코아를 볶거나 가공하여 만든 제품	8%	400~533
유리(과)	3~5%	유리제품	8%	160~267
원유	5%	석유제품	8(7)%	140

※ ( )안은 실행세율

※ 기타 원재료의 관세율 : 천연고무 1(0.5)%, 소금(미정제) 1%, 석회 3%

한편, 일부에서는 원유관세 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1%당 약 2,000억원)을 우려하고 있으나,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에너지세계개편에 따라 2007년까지 매년 2조원 가량의 세수가 증대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관세구조 합리화를 위한 원유관세 세수 부족분은 증대된 내국세로 충당되리라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유·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는 국내 석유시장의 공정 경쟁들을 확립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1997년 수출입자유화이후 석유협회 명의로 수 차례 원유·석유제품간 원유 및 수입부과금 차등화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 언론, 국회 등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본다. 이제 남은 것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세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만이 남았다고 본다. 국내 석유산업이 불합리한 관세제도로 인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 【원유·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 필요성】

### ■ 관세체계의 Global Standard 화

○ 주요 외국의 선진국들은 Energy Security(수급안정성) 확보 및 자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경쟁력 보안을 위하여 원유 및 제품에 대한 차등관세를 시행하고 있음.

- 원유 수입시에는 무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제품에는 원유대비 최고 11배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특히, OECD 주요국가들은 석유제품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상황에서도 원유보다 제품의 수입 관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차등관세를 시행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 성장기 석유수요의 급증에 따라 많은 양의 석유제품 수입이 불가피 하였으나, 현재는 국내생산능력 및 기술력 증대로 석유제품 순수출국으로서 국제적으로도 외국과 경쟁하는 단계에 도달하였으므로 Global Standard에 맞게 원유/제품간 관세 차등화가 필요함.

###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 국내정제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원유/제품간 차등관세 적용필요

- 외국인 투자유치는 수출증대와 함께 경제재건을 위한 절대적인 과제인 바, 대외개방이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외국기업의 국내 정제업에 대한 지분투자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원유와 제품간 차등관세의 시급한 적용이 필요함.

### ■ 국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증대

○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상품생산이 자국내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내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GDP증가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관세율 구조를 운영하고 있음.

- 부가가치란 생산자가 생산과정에서 새로 창출한 가치로서, 제품수입은 이러한 부가가치의 창출효과가 미미한 데 반해 국내생산은 그 효과가 막대함.

○ 따라서, 차등관세 시행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비상품 수입보다는 원자재 도입을 통한 국내 가공도 및 국내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세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증대를 도모하여야 함.

○ 또한, 국내 타산업과 형평성을 위해 원재료인 원유의 관세율 인하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

■ 소비자정제주의 기조하의 국내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원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정제판매하는 방식이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방식보다 안정적인 국내 석유공급기반을 구축하는 데 유리함.

- 이에 따라 모든 석유소비국은 석유공급안정의 중요성 때문에 ‘소비지 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현재처럼 국내 석유제품 생산의 기초 원재료인 원유와 수입석유제품의 관세율이 동일한 것은 소비자 정제주의에 배치됨.

- 1, 2차 석유파동 및 걸프사태시 석유제품 수입의 어려움과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폭등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으며, 평시에도 일시적인 기상악화 및 주변국의 수급상황에 따라 제품수입은 원유에 비해 수급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또한, 국내에서 원유를 정제판매하는 방식(소비지 정제주의)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이에 따른 투자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측면에서도 관세율의 차등화가 반드시 필요함.

■ Hit & Run 식 특정 석유제품 수입방식

○ 석유산업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석유제품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되면서 일부 석유수출입업자가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마진이 좋은 특정 석유제품만을 선택하여 수입 공급하면 석유의 연산품 특성상 국내 석유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 국내 석유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주요 외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현황

구분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원유	5%	5.25¢/B (API 25 미만) 10.5¢/B (API 25 이상)	무세 (170¥/kℓ)	무세	8% (1.5%)	2.5%	무세
휘발유	8% (7%)	52.5¢/B	1,830¥/kℓ (1,386¥/kℓ)	4.7%	14% (9%)	15% (12.5%)	5%
등유	8% (7%)	10.5¢/B	1,760¥/kℓ (564¥/kℓ)	4.7%	14% (9%)	15% (12.5%)	5%
경유	8% (7%)	52.5¢/B	1,640¥/kℓ (1,257¥/kℓ)	3.5%	11% (6%)	5%	5%
중유	8% (7%)	5.25¢/B (API 25 미만) 10.5¢/B (API 25 이상)	600¥/kℓ (0.3%이하-2,593¥/ℓ, 0.3%이상-3,306¥/ℓ) (비중0.9037이상), 390¥/kℓ (0.3%이하-2,376¥/ℓ, 0.3%이상-3,202¥/ℓ) (비중0.9037이상)	3.5%	20% (6%)	15% (12.5%) (비중0.90~0.93) 5% (비중0.93이상)	5%
나프타	5% (1%)	10.5¢/B	1,830¥/kℓ (12¥/kℓ)	4.7%	20% (6%)	무세	5%
아스팔트	5%	무세	무세	무세	35% (8%)	1%	5%
윤활유	7%	84¢/B	9.6% (7.9%) (비중 0.8494이상)	3.7%	17% (9%)	7% (5%)	무세
원유대비 관세비교	1~1.4배	2~10배	3.3~19.4배	3.5~4.7배	4~8배	2~5배	5배

1) 괄호안은 실행세율임

2) 자료 : APEC Tariff Database(www.apectariff.org)

EU는 EU Tariff Schedule